## 워싱턴 D.C. 양형제도 연구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2007. 10. 25.

전문위원 손철우

# 목차

I. 연구의 배경 ···································	1
II. 워싱턴 D.C.에 대한 개관 ·········	2
1. 일반적 특성	2
2. 법원구조	2
Ⅲ. 양형개혁 이전 양형현황 ⋯⋯⋯	2
1. 주요 양형제도	2
가. 부정기형 제도	2
나. 강제형 규정	3
다. 경합범의 처벌	3
라. 집행유예	4
마. 선행감형	4
바. 가석방	5
사. 청년 범죄인 사회복귀법	6
2. 양형 관련 통계	······································
가. 범죄인의 특성	······7
나. 선고형의 형종	9
다. 구금형의 형량	10
라. 유죄협상	12
IV. 양형개혁의 전개 ······	12
1. 양형의 문제점	12
	13

3.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 활동	14
4. 양형자문위원회 설립	15
가. 설립 경과 ·····	15
나. 양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사명	16
V. 양형자문위원회의 초기 활동 ······	17
1. 개요	17
2. 양형자문위원회의 제1차 보고	18
3. 양형자문위원회의 제2차 보고	18
가. 정기형 제도의 도입	18
나. 보호관찰부 석방기간	19
다. 사회복귀법	20
라. 양형기준의 도입	20
VI.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경과	21
VI.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경과	
	21
1. 양형개혁법의 개정	21 23
1. 양형개혁법의 개정	21 23 23
<ol> <li>양형개혁법의 개정</li> <li>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li> <li>가. 평가 기준</li> </ol>	21 23 23 23
<ol> <li>양형개혁법의 개정</li> <li>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li> <li>가. 평가 기준</li> <li>나. 평가 결과</li> </ol>	21 23 23 23
1. 양형개혁법의 개정         2.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         가. 평가 기준         나. 평가 결과         3.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실무(1996~2002)에 대한 평가	2123232325
1. 양형개혁법의 개정         2.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         가. 평가 기준         나. 평가 결과         3.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실무(1996~2002)에 대한 평가         가. 양형정보의 수집	212323232525
1. 양형개혁법의 개정         2.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         가. 평가 기준         나. 평가 결과         3.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실무(1996~2002)에 대한 평가         가. 양형정보의 수집         나. 중죄에 대한 양형 일반	2123232525252525
<ol> <li>양형개혁법의 개정</li> <li>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li> <li>가. 평가 기준</li> <li>나. 평가 결과</li> <li>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실무(1996~2002)에 대한 평가</li> <li>가. 양형정보의 수집</li> <li>나. 중죄에 대한 양형 일반</li> <li>다. 부정기형 제도하에서의 양형 실무</li> </ol>	21 23 23 23 25 25 25 27 27 30
1. 양형개혁법의 개정         2.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         가. 평가 기준         나. 평가 결과         3.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실무(1996~2002)에 대한 평가         가. 양형정보의 수집         나. 중죄에 대한 양형 일반         다. 부정기형 제도하에서의 양형 실무         4. 양형자문위원회의 정기형 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	21 23 23 23 25 25 25 27 27 30

	1. 양형기준의 설정 이유	. 33
	2. 양형기준의 설정 방식	. 34
	가. 주요 고려 사항	·· 34
	나.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접근방식	·· 35
	다. 양형기준의 형식	·· 35
	라. 중죄사건의 범죄등급분류	·· 36
	마. 범죄전력의 점수화	. 37
	바. 형종 및 형량의 결정 방법	. 38
	사. 양형인자의 계량화 여부	38
	3. 구체적 양형기준	. 39
	가. 주 격자표	·· 39
	나. 마약류 격자표	·· 40
	다.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	·· 40
	4. 양형기준 이탈의 원칙	·· 41
	가. 기본 원칙	·· 41
	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및 금지요소	·· 42
	5. 연속형과 동시형의 기준	·· 45
	6.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과 양형자문위원회의 반론	·· 46
	7. 양형기준의 시범실시	·· 47
١	Ⅷ. 양형기준 시범실시 후 형사사법의 변화 ⋯⋯⋯⋯⋯⋯⋯	··· 47
	1. 관련 통계	·· 47
	가. 범죄 증감	·· 47
	나. 구금형 비율	·· 48
	다. 구금형 형량	·· 49
	라. 양형기준의 준수 정도	·· 49
	2. 양형자문위원회의 자체 평가	. 50

IX.	양형기준 시범실시 후 양형위원회의 활동	52
1.	조직의 변경	52
2.	임무	52
3.	활동 내용	53
j	가. 교육	53
L	나. 양형기준 웹 개발	53
[	다. 양형기준 시행 현황 분석	53
Ī	라. 추가 등급분류	54
[	마. 위원회의 권고	54
Χ.:	결론 ······	55



## 워싱턴 D.C. 양형제도 연구

#### 전문위원 손철우

### I. 연구의 배경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는 연방의회가 1997년경 「수도부흥 및 자치 증진법(The National Capital Revitalization and Self-Government Improvement Act, 다음부터 '부흥법'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양형제도가 크게 변화하였고, 특히 2004년경부터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자발적 양형기준(voluntary guideline)을 시범실시(pilot program)함으로 써 최근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다.1)

우리나라는 2007년 4월경 양형위원회를 설립하여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로서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충분하게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자발적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워싱턴 D.C.에서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고 양형기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각되고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과 이에 대한논의 결과 및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행한 각종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을 모색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의 양형개혁전개 과정,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이유뿐 아니라 양형기준의 설정원칙 등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각종 쟁점과 논의 결과 등을 다루었다.

<sup>1)</sup> 물론 워싱턴 D.C.는 양형기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도입하였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워싱턴 D.C.의 양형기준은 모든 중죄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시행기간도 이미 3년을 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도입하였다고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II. 워싱턴 D.C.에 대한 개관

#### 1. 일반적 특성

워싱턴 D.C.는 미국 연방의 수도이면서 미국의 어느 주(州)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 버지니아주와 매릴랜드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워싱턴 D.C.는 주(州)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시장이 대표하는 행정부 이외에 입법부, 사법부가 있으나 워싱턴 D.C.에 대한 최종적이고 최상의 권한(supreme and ultimate authority)은 미국 상원이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 D.C. 의회는 미국 연방 상원에서 워싱턴 D.C.에 적용되도록 정한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없다. 결국 워싱턴 D.C.의 경우 미국의 다른 주(州)와 비교할 때 자치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위성턴 D.C.의 인구는 581,530명(흑인 60.0%, 백인 30.8%, 히스패닉 7.9%, 기타 1.3%)이고, 면적은 177.0㎞이다. 워싱턴 D.C.가 주(州)라고 가정하는 경우 인구는 50번째이고, 면적은 가장 작아서 소규모 주(州)에 해당하게 된다.

#### 2. 법원구조

미국연방의회는 1970년경 워싱턴 D.C.에 제1심법원(superior court))과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s)을 설치하였다. 제1심법원은 법원장 1명과 61명의판사, 21명의 원로판사(senior judge), 24명의 치안판사(magistrate judge)가있는데 그중 형사 담당 판사의 숫자는 26명이다. 제1심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 조세 등 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다. 항소심법원은 워싱턴 D.C.의 최고법원으로서 1명의 법원장과 8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 Ⅲ. 양형개혁 이전 양형현황

#### 1. 주요 양형제도

#### 가. 부정기형 제도

워싱턴 D.C.는 원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e) 제도를 취하고 있었고, 판사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법정형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한을 정하여야 하였다. 2) 선고형의 상한이무기징역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고형의 하한이 15년을 넘을 수 없다는제한이 있다. 다만 선고형의 상한이무기징역형인 범죄가 제2급 고살죄의 경우에는 선고형의 하한을 20년까지 정할 수 있고, 제1급 고살죄의 경우에는 선고형의 하한을 반드시 30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 나. 강제형 규정

위성턴 D.C.에서도 미국의 다른 많은 주(州)와 마찬가지로 입법자들이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강제형(mandatory sentence) 규정을 두었다. 예를 들어 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구금형이고, 이와 동일한 범죄로 2번 처벌을 받게 되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구금형이다. 다만 워싱턴 D.C. 의 경우 약물 관련 중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강제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1995년경 관련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한다.4)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법관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범죄인이 ① 가석방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② 범죄전력상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다른 중죄로 처벌받은 경우,③ 위험하거나 치명적 무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일정 유형의 폭력범죄 또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 경합범의 처벌

워싱턴 D.C.에서는 범죄별로 별개의 선고형이 부과된다. 이 때 양형을 하는 법관은 여러 개의 선고형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할 것인지, 연속하여 집

<sup>2)</sup> D.C. Code §24-203(a)

<sup>3)</sup> D.C. Code §22-2404

<sup>4)</sup>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1993-1998" (September 30, 1999), p.13 각주 8 참조



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3개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부는 동시에, 일부는 연속하여 집행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5) 또한 이미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집행할 것인지, 종전 범죄의 집행 종료 후 연속하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다.

#### 라. 집행유예

워싱턴 D.C.에서는 법관이 구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수 있다. 이러한 집행유예의 방식은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법관은 형의 부과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시부과된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형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유예 조건의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법정형 상한의범위 내에서 본형을 결정하고, 그 본형이 집행된다. 다음으로 법관은 형을정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이 종전보다 낮은 새로운 본형을 정할 수도 있다.

#### 마. 선행감형

선행감형(Good Time)은 수용자가 모범적인 복역 태도를 보이고 자기개 발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행을 하는 경우 그 형기를 감형하는 주는 것이다. 워싱턴 D.C.의 경우 선행감형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① 자동적으로 감 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교정 기관의 재량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4. 6. 22.경 자동적 감형 제도는 폐지되었다.6)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3일부터 5일까지의 비율로 감형이 이루

<sup>5)</sup> D.C. Code §23-112

<sup>6)</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 p.54



어진다. 그러나 제1급 고살죄, 일부 무장 관련 범죄,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력범죄 또는 위험한 범죄, 차량강취, 마약류 중죄 등의 경우에는 선행감형이 이루어지더라도 복역기간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짧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에 이를 때까지만 선행감형이 가능하다.7) 선행감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교정기관은 범죄인의 수용태도에 따라 선행감형의 혜택을 박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석방심사 대상이 되는 시기, 의무적 석방시기8) 등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바. 가석방

수용자가 선고형의 하한을 복역한 이후부터는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된다. 만약 수용자에 대하여 선행감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가석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선고형의 하한에서 형기감형 기간을 공제한 날짜로 조정된다.

부정기형 제도와 결합한 가석방제도는 실제 복역기간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많은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가석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워싱턴 D.C. 가석방심사위원회(District of Columbia Board of Parole)에 있고,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교정국은 선행감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석방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성턴 D.C.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의 허가 여부, 그 조건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위성턴 D.C. 가석방위원회에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모두 9,466건에 대한 가석방심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심사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는 3,963건(41.9%)이었고, 나머지 사건은 가석방이 거부되거나 가석방 결정이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첫 번째 심사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13.0%로 가장 낮았

<sup>7)</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 p.55

<sup>8)</sup>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복역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sup>9)</sup> D.C. Code §24-201(a)



고, 사기범죄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0)

#### 사. 청년 범죄인 사회복귀법

미국연방상원은 1950년경 18세부터 22세 사이에 있는 청년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범죄인 교정법(The Federal Youth Corrections Act)을 제정하였으나 1984년경 폐지하였다. 그 후 워싱턴 D.C. 의회는 1985년경 청년 범죄인 사회복귀법(The Federal Youth Rehabilitation Act, "다음부터 "사회복귀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사회복귀법은 ① 법관에게 개별 청년 범죄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양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② 청년 범죄인을 보다 나이가 많고 숙련된 범죄인들로부터 분리하며, ③ 사회복귀에 성공적 태도를 보인 청년 범죄인에 대하여는 이미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청년 범죄인이 범죄전력이라는 사회적·경제적 낙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11)

사회복귀법은 고살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22세가 되기 이전에 유죄협상을 하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되는데12), 담당 법관은 청년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복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고, 청년 범죄인으로 하여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13), ② 청년 범죄인이 선고형의 상한이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에서 치료 또는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14) 후자의 경우 청년 범죄인이 위탁기간 동안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석방이 가능하다.15)

<sup>10)</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 p.57

<sup>11)</sup>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Repo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April 5, 2000), p.51

<sup>12)</sup> D.C. Code §24-801(6)

<sup>13)</sup> D.C. Code §24-803(a)

<sup>14)</sup> D.C. Code §24-803(b)

<sup>15)</sup> D.C. Code §24-804(a)



#### 2. 양형 관련 통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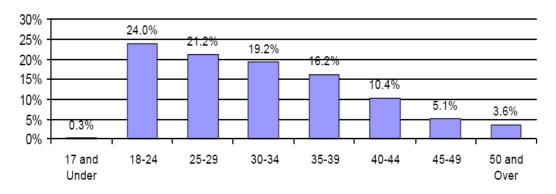
#### 가. 범죄인의 특성

#### (1) 연령

워싱턴 D.C.에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중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피고인(17,332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8세~24세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인의 숫자는 감소하였다.

선고 당시 범죄인의 평균 연령은 31.8세로 나타났는데, 남성 범죄인의 평균 연령은 31.6세, 여성 범죄인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여성의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흑인 범죄인의 평균 연령은 31.7세, 백인 범죄인의 평균 연령은 30.8세로 흑인의 평균 연령이 약간 높았다.

#### ◈ 범죄인의 연령별 통계표 ◈



#### (2) 범죄전력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경우 99%가 범죄전력(경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다)이 있었다. 그중 1개 이상의 중죄 전과가 있는 범죄인은 50.5%였는데, 특히 3개 이상의 중죄 전과가 있는 범죄인도 11.7%나 되었다. 한편 구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범죄인은 33%로 나타났는데, 그중 3회 이상 구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은 3.6%였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경우 마약류 중죄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24%였고, 3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1.0%였다.

<sup>16)</sup> 이 부분 양형통계는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 pp.17-42에 있는 각종 양형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3) 성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 중 남성은 91%로서 범죄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범죄인의 성별로 자주 저지르는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마약류 판매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마약류 판매범죄로 처벌받은 비율이 31.7%로 나타나 남성의 17.4%보다 높게나타났다. 반면 무기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은 전체 범죄인 중 7.0%가 이를 저질렀으나 여성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범죄 분포표 ◈

	Fen	nale	Ma	ale	Total		
		% with this		% with this		% with this	
	Number	Offense	Number	Offense	Number	Offense	
Homicide	36	2.4%	691	4.7%	780	4.5%	
SexChild	3	0.2%	117	0.8%	132	0.8%	
SexAbuse	0	0.0%	151	1.0%	161	0.9%	
Assault with Intent to Kill	2	0.1%	88	0.6%	96	0.6%	
Assault	102	6.7%	810	5.5%	964	5.6%	
Kidnapping	2	0.1%	29	0.2%	34	0.2%	
Robbery	83	5.5%	1,305	8.9%	1,490	8.6%	
Carjacking	0	0.0%	31	0.2%	32	0.2%	
Weapon During Crime of Violence	1	0.1%	94	0.6%	98	0.6%	
Weapon	41	2.7%	1,136	7.7%	1,217	7.0%	
Burglary	22	1.5%	810	5.5%	904	5.2%	
Arson	5	0.3%	15	0.1%	21	0.1%	
Obstruction of Justice	1	0.1%	40	0.3%	46	0.3%	
Escape/Bail Reform Act	280	18.5%	2,225	15.1%	2,700	15.6%	
DrugDistribution	480	31.7%	2,562	17.4%	3,291	19.0%	
DrugPWID	305	20.2%	2,968	20.2%	3,430	19.8%	
DrugViolation of Drug Free Zone	0	0.0%	36	0.2%	39	0.2%	
Unauthorized Use of an Automobile	22	1.5%	550	3.7%	602	3.5%	
Forgery	23	1.5%	74	0.5%	117	0.7%	
Fraud	3	0.2%	10	0.1%	23	0.1%	
Larceny	18	1.2%	181	1.2%	220	1.3%	
Other Property	6	0.4%	153	1.0%	167	1.0%	
Stolen Property	9	0.6%	154	1.0%	181	1.0%	
Other	69	4.6%	471	3.2%	586	3.4%	
Total	1,513		14,701		17,331		

#### (4) 범죄인의 인종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인종을 살펴보면, 흑인은 95%, 백인은 4%, 기타 1%로 나타났다. 워싱턴 D.C.의 인구 분포에 있어 흑인이 약 60%, 백인



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흑인 범죄인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인 및 백인 모두 마약류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흑인의 경우 마약류 판매가 19%, 판매 의도 소지가 20.5%로, 백인의 11.5%, 12.5%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백인의 경우에는 폭행으로 처벌받은 비율이 12%로, 흑인의 5%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인종별 범죄 분포표 ◈

	Black		White		Other	
		% with this		% with this		% with this
	Number	Offense	Number	Offense	Number	Offense
Homicide	701	4.6%	18	2.9%	7	3.6%
SexChild	109	0.7%	10	1.6%	1	0.5%
SexAbuse	142	0.9%	9	1.4%	0	0.0%
Assault with Intent to Kill	88	0.6%	1	0.2%	1	0.5%
Assault	813	5.3%	73	11.7%	23	11.9%
Kidnapping	25	0.2%	2	0.3%	1	0.5%
Robbery	1,324	8.6%	42	6.7%	14	7.3%
Carjacking	31	0.2%	0	0.0%	0	0.0%
Weapon During Crime of Violence	92	0.6%	3	0.5%	0	0.0%
Weapon	1,095	7.1%	65	10.4%	16	8.3%
Burglary	806	5.3%	23	3.7%	2	1.0%
Arson	18	0.1%	1	0.2%	0	0.0%
Obstruction of Justice	41	0.3%	0	0.0%	0	0.0%
Escape/Bail Reform Act	2,366	15.4%	90	14.4%	25	13.0%
DrugDistribution	2,921	19.1%	72	11.5%	40	20.7%
DrugPWID	3,141	20.5%	78	12.5%	37	19.2%
DrugViolation of Drug Free Zone	34	0.2%	2	0.3%	0	0.0%
Unauthorized Use of an Automobile	537	3.5%	24	3.8%	10	5.2%
Forgery	75	0.5%	19	3.0%	1	0.5%
Fraud	13	0.1%	0	0.0%	0	0.0%
Larceny	177	1.2%	20	3.2%	1	0.5%
Other Property	145	0.9%	10	1.6%	4	2.1%
Stolen Property	150	1.0%	12	1.9%	1	0.5%
Other	477	3.1%	50	8.0%	9	4.7%
Total	15,321	·	624	·	193	

#### 나. 선고형의 형종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선고된 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구금형만이 선고된 경우는 62%, 구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6%, 집행유예만이 선고된 경우는 29%였고, 벌금 등 기타 형이 선고된 경우는 3%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차량강취 관련 범죄의 경우 모두 구금형이 선고되었고, 구금 형 선고비율이 가장 낮은 범죄유형은 사기범죄(43.5%)로 나타났다.



#### ◈ 범죄유형별 선고형 형종 ◈

Prison							
	Total	Total	Prison	Prison &			
Offense category	sentenced	prison	only	probation	Life	Probation	Other
Homicide	780	95.5%	92.6%	2.9%	59.9%	2.3%	2.2%
Sexchild	132	77.3%	68.2%	9.1%	6.1%	19.7%	3.0%
Sexabuse	161	91.9%	82.0%	9.9%	19.3%	6.2%	1.9%
Assault with intent to kill	96	97.9%	91.7%	6.3%	27.1%	2.1%	0.0%
Assault	964	73.7%	61.0%	12.7%	1.5%	21.7%	4.7%
Kidnapping	34	85.3%	76.5%	8.8%	17.6%	8.8%	5.9%
Robbery	1490	82.2%	75.8%	6.4%	2.4%	15.9%	1.9%
Carjacking	32	100.0%	90.6%	9.4%	21.9%	0.0%	0.0%
Weapon during crime	98	94.9%	94.9%	0.0%	0.0%	3.1%	2.0%
Weapon	1217	56.1%	47.1%	9.0%	0.0%	38.2%	5.7%
Burglary	904	79.1%	73.6%	5.5%	2.1%	19.0%	1.9%
Arson	21	71.4%	47.6%	23.8%	0.0%	23.8%	4.8%
Obstruction of justice	46	82.6%	71.7%	10.9%	8.7%	15.2%	2.2%
Escape/Bail Reform Act	2700	76.8%	73.0%	3.8%	0.0%	21.3%	1.9%
Drugdistribution	3291	58.0%	54.5%	3.6%	0.0%	39.1%	2.8%
DrugPWID	3430	58.7%	51.1%	7.6%	0.0%	38.9%	2.4%
Drug-Violation of drug free	39	64.1%	43.6%	20.5%	0.0%	35.9%	0.0%
Unauthorized use of an a	602	70.9%	63.3%	7.6%	0.0%	27.4%	1.7%
Forgery	117	57.3%	52.1%	5.1%	0.0%	40.2%	2.6%
Fraud	23	43.5%	34.8%	8.7%	0.0%	52.2%	4.3%
Larceny	220	63.2%	52.3%	10.9%	0.0%	30.9%	5.9%
Property	167	65.9%	56.3%	9.6%	0.0%	31.7%	2.4%
Stolen property	181	61.9%	54.7%	7.2%	0.0%	34.3%	3.9%
Other	586	61.9%	56.7%	5.3%	0.7%	34.6%	3.4%

#### 다. 구금형의 형량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선고된 구금형의 형량을 살펴보면, 살인범죄의 경우 하한이 평균 144개월, 상한이 평균 324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주범죄의 경우 하한이 평균 4개월, 상한이 평균 12개월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강제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있어서 구금형의 형량에서 나타난 편차인데, 가장 편차가 크게 나타난 범죄는 살인범죄로서 살인범죄의 선고형 하한은 평균 144개월이나 하위 25%에 해당하는 구금형량은 60개월, 상위 75%에 해당하는 구금형량은 180개월로 나타났고, 선고형의 상한은 평균 324개월이나 하위 25%에 해당하는 구금형량은 180개월, 상위 75%에 해당하는 구금형량은 432개월로 나타났다.



## ◈ 범죄유형별 선고형 하한의 분포 ◈

Offense category	Total Sentenced*	25th %tile	Median	75th %tile
Homicide	234	60	144	180
Sexchild	60	18	36	40
Sexabuse	79	18	38	60
Assault with intent to kill	25	48	60	72
Assault	390	12	24	36
Kidnapping	7	24	72	84
Robbery	763	12	20	40
Carjacking	7	84	84	84
Weapon during crime of violence	78	60	60	60
Weapon	511	6	12	18
Burglary	500	12	24	36
Arson	3	4	18	24
Obstruction of justice	6	12	32	40
Escape/Bail Reform Act	1938	3	4	8
Drugdistribution	1326	12	24	36
DrugPWID	1505	12	24	30
Drug-Violation of drug free zone	18	9	18	36
Unauthorized use of an auto	365	6	12	15
Forgery	27	6	10.5	12
Fraud	3	12	13.5	15
Larceny	64	10	18	24
Property	47	6	12	24
Stolen property	57	9	12	20
Other	256	3	6	12

## ◈ 범죄유형별 선고형 상한의 분포 ◈

		Number			
	Total	whose max	25th		75th
Offense category	sentenced*	was life	%tile	Median	%tile
Homicide	234	95	180	324	432
Sexchild	60	2	60	108	120
Sexabuse	79	6	60	120	180
Assault with intent to kill	25	3	162	180	216
Assault	390	4	60	90	120
Kidnapping	7	1	72	108	216
Robbery	763	8	36	72	144
Carjacking	7	0	252	252	252
Weapon during crime	78	0	180	180	180
Weapon	511	0	36	45	60
Burglary	500	2	42	72	108
Arson	3	0	72	72	72
Obstruction of justice	6	0	36	96	120
Escape/Bail Reform Act	1938	0	9	12	27
Drugdistribution	1326	0	45	72	108
DrugPWID	1505	0	36	72	108
Drug-Violation of drug free zone	18	0	54	90	150
Unauthorized use of an auto	365	0	24	36	54
Forgery	27	0	18	36	36
Fraud	3	0	45	45	45
Larceny	64	0	36	72	90
Property	47	0	36	66	108
Stolen property	57	0	27	40.5	72
Other	256	3	36	60	108



#### 라. 유죄협상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유죄협상 비율은 89.0%로 나타났다. 범죄유형 별로는 살인범죄의 유죄 협상 비율이 50.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동차 등 절도범죄의 유죄협상비율은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범죄유형별 유죄협상 비율17) ◈

_	Plea		Trial	
Offense category	Number	Percent	Number	Percent
Homicide	394	50.5	386	49.5
Sexchild	112	84.8	20	15.2
Sexabuse	123	76.4	38	23.6
Assault with intent to kill	46	47.9	50	52.1
Assault	764	79.3	200	20.7
Kidnapping	17	50.0	17	50.0
Robbery	1318	88.5	172	11.5
Carjacking	17	53.1	15	46.9
Weapon during crime	96	98.0	2	2.0
Weapon	1064	87.4	153	12.6
Burglary	829	91.6	75	8.4
Arson	17	81.0	4	19.0
Obstruction of justice	17	37.0	29	63.0
Escape/Bail Reform Act	2651	98.2	49	1.8
Drugdistribution	3007	91.4	283	8.6
DrugPWID	3185	92.9	245	7.1
Drug-Violation of drug free zone	25	64.1	14	35.9
Unauthorized use of an auto	584	97.0	18	3.0
Forgery	106	90.6	11	9.4
Fraud	21	91.3	2	8.7
Larceny	199	90.5	21	9.5
Other property	153	91.6	14	8.4
Stolen property	141	77.9	40	22.1
Other	544	92.8	42	7.2

## IV. 양형개혁의 전개

#### 1. 양형의 문제점

워싱턴 D.C.의 경우 양형의 문제점은 부정기형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sup>17)</sup> 범죄별 유죄협상비율은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약 판매죄로 징역 3년, 무장강도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무장강도죄가 기준이 된다.



할 수 있다. 부정기형제도는 인간적 절차로서의 양형, 양형의 목적으로서의 재사회화와 사회방위, 수형자와 직접 대면하는 교정기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얻는 적확한 결정의 가능성, 판사와 교정기관의 역할분담으로 인한 전문화, 감정적 사회여론으로부터의 단절 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나<sup>18</sup>), 미국 내에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 부정기형과 그 이론적 기반이 된 교육형주의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육형주의는 범행이 아니라 범죄인에게 중점을 두어 인종, 국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부적합한 요소에 기초하여 결과적으로 양형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범죄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양형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재범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언급한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워싱턴 D.C.에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경우 99%가 경죄, 중죄 등으로 처 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3개 이상의 중죄 전과가 있는 중죄 범죄인이 11.7%에 이르는 등 과연 부정기형 제도가 재범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 2. 부흥법의 제정

미국 연방상원은 1997년경 부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워싱턴 D.C.에서의 양 형개혁에 관한 움직임을 이끌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워싱턴 D.C.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미국 연방 가석방위원회로 이전함
- 워싱턴 D.C.에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Truth in Sentencing Commission) 설립함
- 2000. 8. 5. 이후 부흥법 제11212조 (h)항에 규정된 중죄사건¹᠀{다음부터 (h)항 중죄사건이라고 한다}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형 제

<sup>18)</sup> 이상원, "미국의 주 양형제도의 변천과 현황",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p.10



도를 도입함

- 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선고형의 85% 이상을 복역하여야 가석방 심사대상이 됨
- 복역 후 석방되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관찰부 석방제도를 도입함

나아가 미국 연방상원은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20)을 고려하여 워싱턴 D.C.에서 양형의 정직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이미 입법화된 강제형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법정형을 변동시키는 권고 의견은 할 수 없도록 하였다.21)

- 범죄인의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인의 범죄경력을 반영하고, 적당한 형벌과 적합한 위하력 및 적절한 교육, 직업 훈련, 의료 치료, 다른 교정 수단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선행감형은 미국 연방 제18장 제3624조에 부합하도록 계산되어야 함
- 구금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석방된 후 적합한 보호관찰 기간 고려
- 워싱턴 D.C. 약물법원 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
- 양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범죄인의 인종, 성, 결혼 상태, 종교, 국적, 신념, 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취향 등에 중립적이어야 함

#### 3.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 활동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는 미국 연방상원에서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의 임무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워싱턴 D.C. 양형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결정하는 주체는 워싱턴 D.C.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활동하였고, 2회에 걸쳐서 워싱턴 D.C. 의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는 1998. 2. 1. 워싱턴 D.C. 의회에 입법안의

<sup>19) (</sup>h)항 중죄사건으로는, 제1금 및 제2급 고살죄, 모살죄, 방화죄, 살인·강도 등 목적의 폭행죄, 제1급 또는 제2급 성적 학대죄, 아동 성적 학대죄, 중폭행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살죄, 사법방해죄, 유괴죄, 강도죄 등 37개 범죄가 포함된다.

<sup>20)</sup> D.C. Code §24-1212(b)(2) 및 §24-1212(d)

<sup>21)</sup> D.C. Code §24-1212(c)



형태로 첫 번째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의회는 이를 채택하였는데 이 법률이 1998. 10. 10. 시행된 「양형의 정직성법(Truth in Sentencing Amendment Act of 1998)」이다. 위 법에서는, (h)항 중죄사건에 대하여 가석방제도를 폐지하였고, 아울러 당시까지는 복역기간과 보호관찰부 석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정형의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관이 법정형의 상한을 포함하여 구금형을 선고한 후 이에 더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부 석방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다음으로 정직성 위원회는 제2차 권고의견을 통하여, 정직성 위원회에서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양형개혁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미해결쟁점으로서 ① 정기형 제도를 모든 중죄와 경죄(misdemeanors)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것인지, ② 보호관찰부 석방의 적절한 보호관찰기간은 어떠한지, ③ 정기형 체제에서의 종신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④ 현재 가능한 중간적 제재의 유형과 향후 추가되어야 할 중간적 제재의 유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⑤ 사회복귀법이 그 연령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실행 가능한 양형의 대체수단으로 될 수 있는지, ⑥ 워싱턴 D.C.에 있어서 체계적 양형 (structured sentencing)이 바람직한지 등을 제시하면서 그 해결에 조력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4. 양형자문위원회 설립

#### 가. 설립 경과

워싱턴 D.C. 의회는 양형의 정직성 위원회의 제2차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1998년경 「양형자문위원회 설립법(the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Establishment Act of 1998)」을 제정하여 양형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워싱턴 D.C. 의회는 양형자문위원회를 단순히 설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양형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sup>22)</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 p.60



- 모든 중죄사건에 있어서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인의 범죄경력을 반영하고, 적당한 형벌과 모든 범죄인에 대한 적 합한 위하력을 제공하며, 범죄인에게 적절한 교육, 직업 훈련, 의료 치 료, 다른 교정 수단 등을 제공하도록 할 것
- 적합한 사건에서 중간적 제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워싱턴 D.C.의 양형정보, 정책 및 실무에 관하여 매년 검토·분석할 것
- 워싱턴 D.C.의 양형정책 및 실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권고 의견을 제출할 것
-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 ① 1999. 9. 30. 이전: 선고형의 형량, 복역기간, 첫 번째 가석방 심사시기에 석방되는 비율, 1998년 양형의 정직성법을 개정함으로 인하여야기된 선고형량과 양형편차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워싱턴 D.C. 양형실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
  - ② 2000. 4. 5. 이전: 워싱턴 D.C.의 양형 및 석방 실무, 양형의 정직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양형체계의 확대 여부, 보호관찰부 석방의 적합한 조건 등에 관한 연구결과

#### 나. 양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사명

양형자문위원회는 1998. 10. 16.부터 활동하였는데, 의결권을 가진 13명의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양형자문위원회는 위신턴 D.C. 의회의 요구와 다른 주(州) 양형위원회의 사명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 사명을 선언하였다.23)

- 양형정책은 정당하고, 공정하고, 일관되며, 확실하여야 한다. 즉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범죄인은 유사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 양형정책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sup>23)</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0 Report, p.9.



즉 범죄인, 피해자 및 일반인은 형벌이 부과될 때 그 양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양형정책은 자원이 현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구금형은 폭력적이거나 반복적인 범죄인에게 사용되어야 하고, 중간적 제재는 적 절한 다른 범죄인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 양형정책은 양형의 목적, 즉 폭력적이고 반복적 범죄인의 격리, 범죄인과 일반인에게 있어서 장래 범죄의 예방,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범죄인이 사회와 재통합, 범죄인의 교화, 피해자와 일반인에 대한 피해배상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양형정책은 적절한 교도소, 구치소 및 사회적 자원에 의하여 뒷받침되 어야 하다.

## Ⅴ. 양형자문위원회의 초기 활동

#### 1. 개요

양형자문위원회는 1998. 12. 14.부터 2000. 3. 27.까지 모두 38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외에도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양형자문위원회는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1999. 12. 14. 개최된 제1차 공청회에서는 양형자문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과제의 모든 쟁점과 관련하여 폭 넓은 의견을 들었고, 2000. 3. 22. 개최된 제2차 공청회에서는 양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의회에 대한 권고의견서 초안에 관하여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양형자문위원회는 4회에 걸쳐 그룹별(8명에서 15명으로 구성) 면 담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2회는 법관들을 상대로, 1회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1회는 검사를 상대로 면담하였다.24)

<sup>24)</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0 Report, pp.6-8.



#### 2. 양형자문위원회의 제1차 보고

양형자문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형사법을 비롯하여 사회경제 정책의 연구기구로서 명성이 높은 Urban Institute에 용역을 맡기어 양형자료의 수집 및분석을 진행하였다. Urban Institute에서는 워싱턴 D.C. 제1심법원, 교정국및 가석방위원회로부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선고된 약 140개에이르는 중죄 사건의 17,332명의 범죄인에 대한 양형 관련 정보를 전자적인방법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24개 범죄유형25)으로 구분하였다. 양형자문위원회는 그 분석결과가 담겨 있는 보고서를 1999. 9. 30. 워싱턴 D.C.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 Ⅲ의 2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26)

#### 3. 양형자문위원회의 제2차 보고

#### 가. 정기형 제도의 도입

위성턴 D.C. 의회는 미국 연방상원의 입법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 연방상원이 제정한 부흥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제도와 가석방제도가 폐지된 (h)항 중죄에 대하여 부흥법의 규정과 같이 정기형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었다. 결국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h)항 중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부정기형과 가석방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h)항 중죄사건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기형 제도를 도입하고 가석방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단일화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이르렀다.27)

<sup>25)</sup> 예를 들어 살인범죄 유형에는 제1급 고살죄, 제2급 고살죄, 살인미수죄, 모살죄, 과실치사죄 등이 포함되었다.

<sup>26)</sup> 양형자문위원회는 법관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독특한 범죄심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개인을 보게 되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통계적·수치적 분석은 범죄인이 아닌 수치와 코드화된 정보를 소급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 양형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 pp.6-7). 결국 양형자문위원회의 2000년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는 워싱턴 D.C.의 양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다.

<sup>27)</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0 Report, pp. 12-17



- 부흥법에 의하여 이미 주요한 중죄에 대하여는 가석방제도가 폐지되었고, 나머지 중죄들은 대체로 장기간의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집 행유예 또는 비교적 단기간의 구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가석방 제도의 유지를 통한 구금 기간의 단축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다.
- 부흥법에 의하여 사실상 장기간의 구금형을 선고받는 범죄인에 대하여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석방 제도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자는 주장은 이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 가석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불필 요하게 법체계가 복잡하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유죄협상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며, 피고인이나 일반인이 양형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 가석방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워싱턴 D.C.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권한이 미국 연방 가석방위원회에 이전된 상태이므로 가석방 심사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관료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
- 범죄인에게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역할은 복역하다가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석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향후로도 가능하다.
- 가석방 제도가 폐지되면 선고형이 증가되고 양형의 편차도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양형정보를 수집하고, 법관을 교육시키며,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의 재량 행사를 체계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대처하여야지 구금형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죄에 대한 가석방을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보호관찰부 석방 기간

양형자문위원회는 보호관찰부 석방의 주된 목적은 범죄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되고, 생산적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호관찰부 석방기간은 그 기간에 구금형의 장기를 더한 기간이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취하였다.<sup>28</sup>)

#### 다. 사회복귀법

사회복귀법은 연방 상원이 제정한 부흥법과 2가지 측면에서 배치되었다. 먼저 사회복귀법의 조기 석방 규정은 모든 (h)항 중죄 사건에 대하여 정기형을 도입하고 가석방 제도를 폐지한 부흥법과 양립할 수 없다. 다음으로부흥법은 연방 교도소 관리국에 위성턴 D.C. 중죄 범죄인을 수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년 범죄인이 성인 범죄인과 다른 시설에서 따로 수용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연방 교도소 관리국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수용되게되었다. 양형자문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귀법이 그 제정 취지를상당히 상실하게는 되었으나, 사회복귀법이 기초한 청년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귀이론은 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고살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청년 범죄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가석방 폐지 등을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99

#### 라. 양형기준의 도입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기준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단 양형기준의 도입에 대하여는 권고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30)

● 양형기준의 도입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보다 철저한 연구가 요구된다.

<sup>28)</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0 Report, pp. 23, 26

<sup>29)</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0 Report, p. 55

<sup>30)</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0 Report, pp. 76-77



- ① 양형기준은 의도적으로 법관의 재량과 권한을 제한하며, 많은 사람들이 법관의 재량과 권한이 검사에게로 이전되며, 그 결과 검사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양형기준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대부분 믿고 있는데, 그 융통성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재량을 제한한다는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며, 반대로 너무 좁아지면 양형기준을 복잡하고 기계적인 절차로 변환시킨다.
- ③ 양형기준은 권고적이거나 기속적일 수 있고, 양형에 대한 항소심의 심사도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재판권과 사법부의 업무 부담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모든 주와 연방의 양형기준은 재정적 이유로 인한 견제와 균형이 내제되어 있고,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부당한 개정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경우 중죄 범죄인에 대한 구금 및 보호관찰의 비용을 워싱턴 D.C.에서 부담하지 않고 연방에서 부담하므로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

## VI.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경과

#### 1. 양형개혁법의 개정

워싱턴 D.C. 의회는 2000년경 양형자문위원회의 제2차 보고에 기초하여 「양형개혁법에 대한 개정법(The Sentencing Reform Amendment Act)」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1)

<sup>31)</sup> D.C. Code Act 13-406.

<sup>32)</sup> 결국 워싱턴 D.C.의 양형제도는 '2000. 8. 5.'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 2000. 8. 5. 이후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기형 제도를 도입함32)
- 가석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05. 8. 5. 이후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석방제도를 도입함
- 청년 범죄인에 대하여도 정기형을 선고함.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되면 청년 범죄인이 선고받은 유죄판결은 무효화됨. 다만 선고형을 상 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범 여부를 판단하거나, 성범죄인 등록 및 통지 등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음
- 양형자문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2002년 연간보고서

- ① 미국 내에서 시행되는 체계적 양형(structured sentencing)<sup>33)</sup>에 관한 조사결과
- ② 워싱턴 D.C.에 가장 적합한 양형제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적 의견
- ③ 워싱턴 D.C. 범죄의 등급분류에 대한 권고적 의견
- ④ 2000. 8. 5. 이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이유에 관한 분석 결과
- ⑤ 정기형 제도의 시행에 대한 중간 평가
- ⑥ 1996. 8. 5.부터 2000. 8. 5.까지 양형실무에 대한 평가

#### (2) 2003년 연간보고서

- 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형제도에 대한 권고적 의견 또는 워싱턴 D.C.에서 체계적 양형제도가 필요한 이유
- ② 정기형 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 평가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구법(the old law)에 기한 양형제도와, 2000. 8. 5. 이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는 신법(the new law)에 기한 양형제도로 구분되게 되었다.

<sup>33)</sup> 체계적 양형제도를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종전 부정기형제도와 가석방제도하에서 법관, 교정기관 등 양형 관련 기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양형의 과정을 보다 조직화체계화하고, 양형관련 기관의 재량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양형에 관한 새로운 입법, 양형기준의 설정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예로는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스주, 마인주, 뉴멕시코주를 들 수 있다(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Annual Report" (2002, p. 3 참조).



#### 2.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

#### 가. 평가 기준

양형자문위원회는 워싱턴 D.C. 의회에서 부여한 과제인 '미국 연방 및 각 주(州)의 양형제도에 관한 평가'를 위해서 양형자문위원회가 이미 선언하 였던 사명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9가지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sup>34)</sup>

- 일관성 및 부당한 양형편차의 감소
- 적절한 사법부 재량의 유지
- 행위비례성
- 항소심 심사를 통한 개별 판결의 책임 강화
- 양형에 관한 명확한 기준
- 양형기준에 대한 높은 준수
- 제한된 교정 능력과 자원의 적절한 활용
- 중간적 제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 폭력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자의 격리

#### 나. 평가 결과

양형자문위원회는 그 때까지 이루어진 각종 연구자료와 미국 연방 및 각 주(州)에 대한 개별적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각 주 (州)의 고유한 특성과 제도로 인하여 평가가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일응 위 9 가지의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35)

구분	일관성/ 부당한 양형편차 감소	사법부 재량 유지	행위 비례성	항소심 양형 심사	양형의 명확한 기준	이항 준에 대한 높은 준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간적 제재의 적절한 활용	폭력적· 상습적 범죄자 격리
알라바마		0							
알라스카		0	0		0				
아리조나	0		0		0				

<sup>34)</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 10 참조

<sup>35)</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부록3 참조



	이키서/					りばけて刻	게치디	スルカ	포러지
	일관성/	사법부	~i) ()	항소심	양형의	양하군에	제한된	중간적	폭력적·
구분	부당한	재량	행위	양형	명확한	대한	자원의	제재의	상습적
	양형편차	유지	비례성	심사	기준	높은	효율적	적절한	범죄자
	감소	'' '		ш	.	준수	활용	활용	격리
아칸사스		0	0		0		0	0	
캘리포니아	0								
커네티컷		0							
델라웨어		0	0		0	0	0	0	0
D.C.		0							
플로리다		0							
조지아		0							
하와이		0							
아이다호		0							
일리노이즈	0		0		0				
인디아나		0							
아이오와		0							
캔사스 루이지애나	0	0	0	0	0	0	0	0	0
머인		0	0						
매릴랜드		0	0		0				
메시츄세츠		0	0		0			0	
미시건	0		0	0	0			0	
미네소타	0		0	0	0		0		0
미시시피		0							
미주리		0	0		0			0	
몬타나		0	_						
네브라스카		0							
네바다		0							
뉴햄프셔		0							
뉴저지		0							
뉴멕시코	0		0		0				
뉴욕		0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다코다	0		0	0	0	0	0	0	0
개놀다이나									
エントゴト		0							
오하이오	0		0	0	0		0	0	
오클라호마 오레곤	0	0	0	0	0		0	0	0
포데는 펜실베니아	0		0	0	0	0		0	0
로드	0								
아일랜드		0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0							
사우스 다코다		0							
테네시		0							



구분	일관성/ 부당한 양형편차 감소	사법부 재량 유지	행위 비례성	항소심 양형 심사	양형의 명확한 기준	양항 문에 대한 높은 준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간적 제재의 적절한 활용	폭력적· 성습적 범죄자 격리
텍사스		0							
유타		0	0		0		0	0	
연방	0		0	0			0	0	0
버몬		0							
버지니아		0	0		0			0	0
워싱턴	0		0	0	0	0	0	0	0
웨스트 버지니아		0							
위스콘신		0							
와이오밍		0							

#### 3.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실무(1996~2002)에 대한 평가

#### 가. 양형정보의 수집

2000년 개정된 양형개혁법에 따라 워싱턴 D.C. 제1심법원에서는 1996.

1. 1.부터 2002. 6. 30.까지 유죄가 선고된 13,524건에 대한 범죄사실, 선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일부 배경적 특성, 다른 양형인자 등이 포함된 전자화된 양형정보를 법원정보시스템(Court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양형자문위원회에 송부하였다.36)

#### 나. 중죄에 대한 양형 일반

#### (1) 선고형의 형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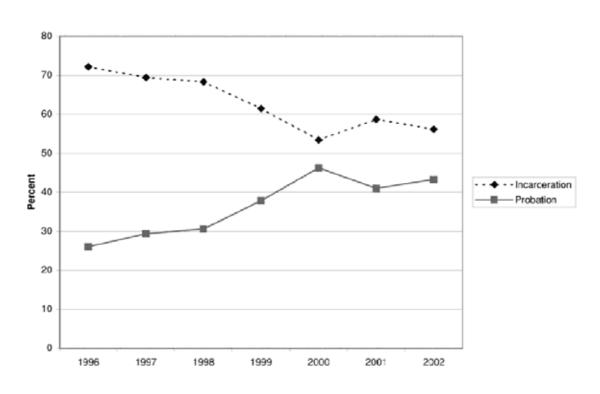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처리된 중죄사건 중 구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62.4%였고, 구금형이 없는 집행유예의 비율은 36.7%, 벌금형 등의 비율은 0.8%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으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1996년의 경우 중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6.1%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상반기에는 43.3%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집행유예 비율은 2000년

<sup>36)</sup> 그러나 이 정보에는 범죄인의 사회적 배경, 민족에 관한 정보, 피해자 정보, 소지 무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다양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결국 양형 자문위원회로서는 구체적 양형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 30 참조).



에 46.2%가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정기형 제도 시행 이후 주춤하고 있다.37) 또한 심각한 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 역시 상승하지 아니하였다.

#### ◈ 중죄사건에 대한 선고형종의 변동 추이 ◈



#### (2) 범죄인의 특성38)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죄 범죄인의 특성은 1993년부터 1998년 까지의 중죄 범죄인의 특성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중죄 범죄인의 평균 연령은 32.5세로 나타났는데, 18세~24세에 해당하는 범죄인이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범죄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범죄인의 평균연령은 32.2세, 여성 범죄인의 평균연령은 35.2세였고, 흑인 범죄인의 평균연령은 32.5세, 백인 범죄인의 평균연령은 31.1세였다. 다음으로 범죄인의 성별과 인종을 살펴보면, 범죄인의 90%가 남성이었고, 94.1%가 흑인으로 나타나 결국 흑인 남성이 범죄인의 대

<sup>37)</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 38

<sup>38)</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47-51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죄전력의 측면에서는 중죄 범죄인 중 53.1%는 중죄 범죄전력이 없었으나 37.2%는 1~2개의 중죄 범죄전력이 있었고, 3개 이상의 중죄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인은 9.7%로 나타 났다. 또한 중죄 범죄인 중 복역 경력이 있는 경우는 66%였는데, 복역 경력이 1~2회인 범죄인은 29.4%, 복역 경력이 3회 이상인 범죄인은 4.5%였다.

#### 다. 부정기형 제도하에서의 양형 실무

양형자문위원회는 부정기형제도 하에서의 양형 결과를 분석하여 형종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 형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중대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경합범 여부

단일범으로 처벌받는 범죄인의 경우 구금형 비율은 63.1%이고, 경합 범으로 처벌받는 범죄인의 경우 구금형 비율은 63.8%로써 별다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다만 구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량<sup>39)</sup>에 있어서는 단일범의 경우 10개월, 경합범의 경우 32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다.<sup>40)</sup>

#### (2) 전과41)

중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범죄인의 경우 구금형 선고를 받는 비율은 72.4%로, 그러한 전과가 없는 범죄인의 55.5%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과는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형량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3) 인종42)

형종에 있어서 범죄인의 인종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죄 전력이 없는 범죄인의 경우 흑인은 55.6%, 흑인 이외 인종은 55.0%가 구금형

<sup>39)</sup> 이하 구금형의 형량은 모두 선고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sup>40)</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75

<sup>41)</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68-69, 76

<sup>42)</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71, 78



을 선고받았고,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경우 흑인은 72.3%, 흑인 이외 인종은 74.0%가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구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량에 있어서는 단일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10개월로 동일하였으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경우 흑인은 31개월, 흑인 이외 인종은 24개월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 (4) 성43)

형종에 있어서 범죄인의 성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전력이 없는 범죄인의 경우 구금형 선고비율이 여성은 36.6%였으나 남성은 58.2%로 나타났다.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경우에도 구금형 선고비율이 여성은 57.1%였으나 남성은 73.9%였다.

이러한 편차는 개별 범죄유형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남성의 구금형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o Priors				Priors			
	Female		Male		Female		Male	
Offense Category	Total	%	Total	%	Total	%	Total	%
Violent								
Seriousness Level 1	34	91.2	598	96.0	6	100.0	261	99.6
Seriousness Level 2	73	56.2	694	81.3	22	86.4	494	91.7
Seriousness Level 3	37	37.8	199	58.8	7	57.1	167	83.8
Property	85	22.3	580	59.1	26	69.2	769	76.6
Drug	256	21.1	1603	37.2	135	38.5	1524	60.0
Weapon	23	30.4	617	47.5	2	100.0	206	71.4
Public Order	185	49.7	617	61.3	163	66.3	1401	74.4
Other	51	27.4	147	51.0	10	30.0	88	73.9
Total	744	36.6	5055	58.2	371	57.1	4910	73.6

◈ 성별 구금형 비율 ◈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형량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성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단일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남성의 구금형량은 평균 10개월이었으나 여성은 평균 4개월에 불과하였고,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남성의 구금형량은 평균 36개월이었으나 여성은 평균 23개월이었다. 이러한 편차는 개별 범죄 유형에서도 대체로 확인되었다.

<sup>43)</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71-72, 78-79



#### ◈ 성별 구금형량 ◈

	Single Charge			Multiple Charge				
Major offense category	Female		Male		Female		Male	
and seriousness level	Number	Months	Number	Months	Number	Months	Number	Months
Violent								
Serious level 1	10	72	190	69	25	144	595	222
Serious level 2	19	18	283	24	37	40	664	60
Serious level 3	9	12	133	12	8	21	102	20
Property	12	6	256	12	21	24	529	24
Drug	40	12	638	12	51	20	634	24
Weapon	4	7	75	10	4	10	291	14
Public Order	132	4	869	4	30	12	295	8
Other	5	2	34	12	10	10	90	20
Total	231	4	2478	10	186	23	3200	36

#### (5) 연령44)

범죄인의 연령을 24세 이하, 25세부터 39세까지, 40세 이상으로 분류한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금형의 비율은 낮아졌다. 즉 중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범죄인의 경우 구금형 비율이 24세 이하는 65.7%, 25세부터 39세까지는 51.1%, 40세 이상은 44.1%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동일범죄 유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 연령별 중죄 범죄전력 없는 경우의 구금형 비율 ◈

			No F	Priors			
	24 and Under		25-	39	40 and Over		
Offense Category	Number	%	Number	%	Number	%	
Violent							
Seriousness Level 1	400	97.2	166	93.4	65	92.3	
Seriousness Level 2	340	85.3	324	74.1	103	72.8	
Seriousness Level 3	63	60.3	125	55.2	48	50.0	
Property	245	60.8	308	51.6	111	47.7	
Drug	667	44.8	796	32.4	396	23.7	
Weapon	306	56.2	235	39.6	99	35.3	
Public Order	168	60.7	425	58.1	209	57.9	
Other	52	65.4	94	42.5	51	29.4	
Total	2241	65.7	2473	51.1	1082	44.1	

다만 중죄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경우에는 구금형 비율이 24세 이하

<sup>44)</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71-73, 79-80.



는 78.2%, 25세부터 39세까지는 74.1%, 40세 이상은 66.4%로 나타나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형량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연령은 영향을 미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일범으로 처벌받은 경우 구금형량이 24세 이하는 평균 12개월, 25세부터 39세까지는 평균 9개월, 40세 이상은 평균 8개월로 나타났고,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경우 구금형량은 24세 이하는 평균 48개월, 25세부터 39세까지는 평균 30개월, 40세 이상은 평균 24개월로 나타났다.

#### (6) 무기 소지 여부45)

양형자문위원회가 분석한 요소 중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행 당시 무기의 소지 여부였다. 중죄 범죄전력이 없는 중죄 범죄인의 경우 무기를 소지한 범죄인의 구금형 비율은 87.4%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범죄인의 46.6%보다 훨씬 높았다. 중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중죄 범죄인의 경우에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인의 구금형 비율은 96.8%, 무기를 소지하기 않은 범죄인의 구금형 비율은 65.9%로 나타났다.

무기 소지 여부는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단일범으로 처벌되는 사건의 경우 무기를 소지한 범죄인은 형량이 평균 56개월로써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범죄인의 평균 18개월보다 높았다.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사건의 경우 무기를 소지한 범죄인의 형량은 평균 154개월로나타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범죄인의 평균 45개월보다 훨씬 높았다.

#### 4. 양형자문위원회의 정기형 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

양형자문위원회는 2003년도에 법원정보시스템과 법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정기형 제도 실시에 따른 중간 평가를 하였는데, 양형 결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법관의 철학을 비롯하여 변수도 많아 양형 이유를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46), 주로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제시하였다.

<sup>45)</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73-74

<sup>46)</sup>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Annual Report" (2003),



#### 가. 선고형의 형종 분포47)

정기형 제도하에서 중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선고된 4,418명에 대한 분석 결과 매년 구금형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금형 비율의 증가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나타났으나 다만 공공질서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구금형 비율이 2001년도 25.7%, 2002년도 23.4%, 2003년도 12.1%로 점차 감소하였다.

◈ 연도별 선고형 분포 ◈

Year	Total sentenced	Incarceration	Probation	Other
2001	1082	628 (58%)	452 (42%)	2 (.2%)
2002	1969	1259 (64%)	697 (35%)	13 (.7%)
2003(Jan Jun.)	1367	906 (66%)	450 (33%)	11 (.8%)
Total	4418	2793	1599	26

#### 나. 구금형의 형량48)

정기형을 도입한 신법에서의 구금형의 형량은 부정기형이던 구법과 비교하여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구법	신법		
1급 폭력범죄	143개월	181개월		
2급 폭력범죄	29개월	45개월		
3급 폭력범죄	13개월	17개월		
재산범죄	18개월	22개월		
마약류범죄	19개월	18개월		
무기관련범죄	14개월	13개월		
공공질서범죄	5개월	10개월		

그러나 위 통계자료는 구법에서의 형량을 선고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복역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드시 형량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구법의 경우 범죄인의 실제 복역기간을

p. 2

<sup>47)</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3-5

<sup>48)</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7-11



기준으로 신법의 형량과 비교하려고 하였으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비교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5.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체계화에 대한 권고

양형자문위원회는 위 제2항과 같은 양형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추정적 양형기준(presumptive guideline)49)을 채택한 주(州) 중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자발적 양형기준(voluntary guideline)을 채택한 주(州) 중에서는 델라웨어주, 복합적 양형기준(hybrid guideline)50)을 채택한 주(州) 중에서는 펜실베니아주,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아닌 입법을 통하여 양형문제를 해결한 주(州) 중에서는 일리노이스주에 대하여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위 4개주(州) 법관, 변호사, 검사, 양형위원회 직원들을 초대하여 양형제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후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 양형자문위원회는 2003년 11월경까지 유죄가 선고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인의 범죄경력에 주로 기초한 자발적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 양형기준에는 권고되는 선고형,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권고적인 구금 형량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형량의 범위는 사법부의 재량이 존 중되도록 비교적 넓어야 하나, 양형의 일관성과 비례성의 목적을 상실 시킬 정도로 넓어서는 아니 된다.
- 양형기준은 2가지 비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범행의 중대성이 커질수록 권고되는 형도 무거워져야 하며, 범죄인의 범죄경력이 심각할 수록 권고되는 형은 무거워져야 하다.

<sup>49)</sup> 법관은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추정적 형량(presumptive sentences)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고, 특별한 가중 요소나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이탈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추정적 양형기준이라 고 표현하다

<sup>50)</sup> 복합적 양형기준은 완전히 추정적이거나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양형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NCSC(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 추정적 양형기준과 자발적 양형기준이 2분적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연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는 전제하에 펜실베니아주가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각주 26 참조).



- 법관들은 권고되는 양형기준을 따르고 권고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양형기준은 자발적이므로 법관은 특별한 경우에 상향 또는 하향하는 선고형이 가능하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이유를 밝히도록 될 것이다.
- 현행법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 VII. 양형자문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 1. 양형기준의 설정 이유

양형자문위원회의 최초 논의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이 워싱턴 D.C.에 바 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기속적 양형기준이 타당한지, 권고적 양형기준이 타 당한지 등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양형자문위원회는 2002년도에 진 행된 미국 연방 및 각 주(州)의 양형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중 노스 캐 롤라이나주 등 4개 주(州)에 대한 추가적 연구 및 워싱턴 D.C.의 양형실무에 대한 기초 분석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준 형량의 범위 등에 있어서 법 관의 비교적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권고적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5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형자문위원회는 워싱턴 D.C.가 체 계적 양형제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① 워싱턴 D.C.의 양형실무 를 분석한 결과 선고형의 형종 및 형량 등에 있어서 양형편차가 확인되었고, 그 이유가 적법한 양형요소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 할 수 없으나 만약 그 편차가 단지 사법적 철학의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 고 이로 인하여 유사한 상황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을 선 고받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② 정기형 제도의 도입으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배제된 채 법관이 형량을 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의 범위가 넓으므 로 그와 같은 넓은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52)

<sup>51)</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Introduction pp. 1-3

<sup>52)</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13-14



다음으로 체계적 양형제도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도입하여 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① 다른 주(州)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은 비록 양형편차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② 양형기준은 정책 결정자나 일반인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양형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며, ③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관의 양형실무가 보다 투명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53)

한편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① 다른 주(州)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권고적 양형기준은 사법자원의 활용에 부담을 주고 법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않는 소송을 방지하면서도 높은 준수율을 달성하였고, ② 권고적 양형기준은 법관으로 하여금 개별적 사건에서의 다양한 상황 내지 요소에 적합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하며, ③ 또한 권고적 양형기준은 양형자문위원회가 장래 필요한 경우 형량의 범위를 조정하고,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양형인자를 반영하며, 예상하지 못한 양형실무의 커다란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54)

#### 2. 양형기준의 설정 방식

#### 가. 주요 고려 사항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양형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간 낭비적이며 비 경제적인 소송을 막고, 사용자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또한 양형제도는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기준이 범 죄인 사이의 차이에 민감하며 일반인이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55)

<sup>53)</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16-17

<sup>54)</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15-16



### 나.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접근방식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접근방식은, 현행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고 양형기준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적 접근방식(descriptive approach) 내지 경험적 접근방식과 정책적 논점과 양형 철학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양형정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이러한 양형정책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규범적 접근방식(prescriptive approach)이 있다. 양형자문위원회는 미래의 양형을 과거 양형실무의 중간 정도의 영역에 해당하도록 하여야만 과거 및 현재의 양형실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않으면서도 양형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적 접근방식을취하였다. 원래 양형자문위원회는 실제 수용인의 복역기간에 대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미미하여 결국 실제 선고형(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56)

### 다. 양형기준의 형식

양형자문위원회는 다른 주(州)의 양형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 양형에 있어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1998년의 양형자문위원회 설립법에서도 모든 중죄 범죄인의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전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형량의 범위가 결정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57)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 등 다른 주(州)의 예를 참조하여 격자식 양형기준을 만들었는데,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중죄에 적용 되는 주 격자표(Master Grid)와 마약류범죄에 적용되는 격자표(Drug Grid)를 만들었다.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격자표를 만든 이유는, 과거양형 패 턴이 주로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된 단기 분리형(short split sentence)58)이나

<sup>55)</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26-27

<sup>56)</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29-30

<sup>57)</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 23

<sup>58)</sup> 단기분리형은 법관이 구금형 중 일부만을 집행유예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단기간 복역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 범죄인에 대하여는 별 도의 격자표를 만드는 것이 마약류범죄에서 야기되는 정당한 응보와 교화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59)

### 라. 중죄사건의 범죄등급분류

양형자문위원회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법정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보다 많은 기준에 의하여 범죄등급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중죄사건의 등급을 그 중대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양형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죄 사건에 대하여 전형적 사건을 상정하고 그 사건의 해악성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규범적 의식에 기초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즉, 양형자문위원회 위원들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51개 범죄의 목록을 교부받아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범죄들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60) 위와 같은 분류 결과 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는 전형적 범죄의 형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자문위원회는 2001년경 범죄등급 분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2002년도에 수집한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워싱턴 D.C. 양형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범죄등급을 조정하여 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002년도에 중죄의 범죄등급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워싱턴 D.C. 의회에 보고하였다.61)

그후 양형자문위원회는 2002년도에 보고된 범죄등급분류에 기초하여 각 범죄의 전형적이고 핵심적 사건에 대한 실무가의 관점,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피해의 정도, 법정형을 통하여 나타나는 입법자의 의도, 각 위원의 범죄

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sup>59)</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38-39

<sup>60)</sup> 최초에 10개의 그룹으로 범죄등급을 분류하려고 시도한 이유는 다른 주(州)의 양형기준에서 대부분 6개 내지 14개 사이로 범죄등급을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sup>61)</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Report, pp. 111-114



의 중대성에 대한 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등급을 재조정하여 나 갔고, 최종적으로 마약류범죄를 제외한 중죄는 9등급으로, 마약류범죄는 3등 급으로 분류하였다.62)

### 마. 범죄전력의 점수화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범죄전력을 반영한다면 어떤 범죄전력을 고려할 것인가, 고려되는 범죄전력의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범죄전력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전력의 점수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범죄전력 소위원회에서는 범죄등급 분류 소위원회의 범죄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전력이 범죄등급 1~4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점, 5, 6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점, 7~9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점,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63) 그 후 범죄전력 소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전력에 점수를 부여하기로 하였다.64)

#### ◈ 범죄전력의 점수 부여 방법 ◈

구분	범죄등급	점수		
	주 격자 1~5급	3		
성인 중죄 전과	주 격자 6~7급 및 마약류 격자 1급	2		
	주 격자 8~9급 및 마약류 격자 2~3급	1		
성인 경죄 전과		0.25 (단 경죄전과가 많더라도 1.5점이 상한임)		

<sup>62)</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37-38

<sup>63)</sup>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한 개별 통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sup>64)</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39-42. 연방 및 다른 주(州)에서의 전과도 유사하게 고려된다.



다른 중죄	주 격자 1~5급	3
전과로 인하여 고려되는 성인	주 격자 6~7급 및 마약류 격자 1급	1
중죄 전과65)	주 격자 8~9급 및 마약류 격자 2~3급	0.5
소년 중죄 전과66)	주 격자 1~5급	1.5
	주 격자 6~7급 및 마약류 격자 1급	1
	주 격자 8~9급 및 마약류 격자 2~3급	0.5

### 바. 형종 및 형량의 결정 방법

양형자문위원회는 기준 형종 및 형량을 결정하면서 철저하게 과거의 양형통계자료에 의존하였다. 우선 집행유예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한 칸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한 종전 양형에서 25%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통계적으로 25%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구금형량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칸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한 종전 양형을 기준으로 상위 25%와 하위 25%를 배제한 50%의 형량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다.67)

#### 사. 양형인자의 계량화 여부

양형자문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등급 분류하고, 범죄전력을 점수화하였으나, 나아가 개별적 양형인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량화하지 아니하였다. 후술하는 것처럼 양형자문위원회는 개별적인 양형인자를

<sup>65)</sup> 종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현재 범행일까지 10년이 경과한 중죄전과 및 경죄전과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중죄 전과의 경우 만약 범죄인에게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죄 전과가 있다면 10년이 경과한 중죄 전과도 예외적으로 고려된다.

<sup>66)</sup> 소년 중죄 전과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주격자 1~5급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소년 전과는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죄 여부를 불문하고 고려하지 않는다.

<sup>67)</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Annual Report, p. 15



가중적 양형인자와 감경적 양형인자로 나누어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쳤다.

## 3. 구체적 양형기준68)

## 가. 주 격자표

		Criminal History Score				
	Ranking Group Most Common Offenses	0 to ½ A	¾ to 1¾ B	2 to 3¾ C	4 to 5¾ D	6 + E
	Group 1 1st degree murder w/armed 1st degree murder	360 - 720	360 - 720	360 - 720	360 - 720	360 +
	Group 2 2nd degree murder w/armed 2nd degree murder 1st degree sex abuse 1st degree sex abuse w/armed	144 - 288	156 - 300	168 - 312	180 - 324	192 +
3 Points*	Group 3 Voluntary manslaughter w/armed 1st degree child sex abuse Carjacking while armed Assault with intent to kill w/armed Armed burglary I	90 - 180	102 - 192	114 - 204	126 - 216	138 +
	Group 4 Aggravated assault w/armed Voluntary manslaughter	48 - 120	60 - 132	72 - 144	84 - 156	96 +
	Group 5 Possession of firearm /CV Armed robbery Burglary I Obstruction of justice Assault with intent to kill	36 - 84	48 - 96	60 - 108	72 - 120	84 +
2 Points*	Group 6 ADW Robbery Aggravated assault 2nd degree child sex abuse Assault with intent to rob	18 - 60	24 - 66	30 - 72	36 - 78	42 +
2 Po	Group 7 Burglary II 3rd degree sex abuse Negligent homicide Assault w/l to commit mayhem Attempt 2nd degree sex abuse	12 - 36	18 - 42	24 - 48	30 -54	36 +
	Group 8 CPWOL UUV Attempt robbery Attempt burglary 1st degree theft	6 - 24	10 - 28	14 - 32	18 - 36	22 +
1 Point *	Group 9 Escape/prison breach BRA Receiving stolen property Uttering Forgery RSP	1 - 12	3 - 16	5 - 20	7 - 24	9+

## ※ 흰 칸은 구금형만 가능함

<sup>68) 2003. 11. 30.</sup>자로 제안된 양형기준안은 2004. 6. 14.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수정되었으므로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설명한다.



- ※ 어두운 칸은 구금형 또는 단기분리형이 가능함
- ※ 좌측 하단의 밝은 회색칸은 구금형, 단기분리형 또는 집행유예가 모두 가능함
- ※ 격자표 좌측에 기재된 점수는 이 그룹에 속하는 성인범 중죄 전과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점수를 의미함

#### 나. 마약류 격자표

		Criminal History Score				
	Ranking Group Most common offenses	0 to ½ A	¾ to 1¾ B	2 to 3¾ C	4 to 5¾ D	6 + <b>E</b>
2 Points*	Group 1 Distribution w/a PWID w/a	30-72	36-78	41-84	48-90	54+
Point*	Group 2 Distribution PWID	12-30	16-36	20-42	24-48	28+
1 Poi	Group 3 Attempt Distribution Attempt PWID	6-18	10-24	14-30	18-36	22+

- ※ 흰 칸은 구금형만 가능함
- ※ 어두운 칸은 구금형 또는 단기분리형이 가능함
- ※ 좌측 하단의 밝은 회색칸은 구금형, 단기분리형 또는 집행유예가 모두 가능함
- ※ 격자표 좌측에 기재된 점수는 이 그룹에 속하는 성인범 중죄 전과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점수를 의미함

#### 다.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워싱턴 D.C.의 양형기준은 범죄전력을 X축으로, 범죄등급을 Y축으로 한 격자식이다. 주격자표는 범죄등급이 9등급, 범죄전력 이 5등급으로 구분되어 45개의 칸이 생성되었고, 마약류 격자표는 범죄등급 이 3등급, 범죄전력이 5등급으로 구분되어 15개의 칸이 생성되었다. 법관의



양형 단계가 피고인을 구금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구금하는 경우 그 형량에 대한 결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칸에는 구금형의 형량뿐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도 포함시켰다.69)

법관은 중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등급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부여된 점수에 따라 어떠한 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법관은 중죄사건에서 유죄인정 협상 또는 배심원의 유죄평결이 난 후에 CSOSA(the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에 판결 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CSOSA 담당자는 7주내에 판결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법관에게 송부하고 있다. 이 판결전 조사보고서에는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관은 그내용의 적정성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70)

한편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법령상 형이 가중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양형자문위원회는 이 경우 상한만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무장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주격자표 5A칸에 해당하여 그 형량의 범위가 36개월부터 84개월까지가되는데, 워싱턴 D.C.에서는 무장강도 범죄의 피해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형을 1/2 가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위 사안에서 피해자가 60세 이상이었다면 형량의 범위는 36개월부터 126개월이 된다.71)

#### 4. 양형기준 이탈의 원칙72)

#### 가. 기본 원칙

양형자문위원회는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허용되는 이탈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원칙을 설정 하지 아니하였고, 법관이 양형기준의 이탈 여부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sup>69)</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23-25

<sup>70)</sup> 홍지영, "워싱턴 디씨 양형제도", 해외 양형제도 자료집, 사법정책실(2007), pp.540-541

<sup>71)</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6 Practice Manual" (2006), p.4-1

<sup>72)</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43-45, 52



기본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형종과 형량의 범위에 해당하는 양형은 이탈로 보지 않음
- 양형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양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양형기준의 이탈은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형종과 형량과 다른 양형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또한 경합범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연속형을 권고 하였으나 동시형을 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발생함
-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양형은 실질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 양형기준에서의 이탈이 이루어지는 상황 또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나열(허용되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한정적 이지는 않음)은 적절함
- 법관이 양형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행 법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떤 형벌이라도 부과할 수 있음

## 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및 금지요소73)

양형자문위원회는 법관이 양형기준 이탈시 고려할 수 있는 한정적이지 않는(non-exclusive)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를 제시하고 아울러 고려하여서는 아니될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이탈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1) 가중요소

-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 잔인함 또는 당해 범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이유 없는 폭력의 행사
- 피해자가 연령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범죄에 취약하였

<sup>73)</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Annual Report, pp. 45–51



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
- 피고인이 청부에 의하여 고살죄, 모살죄, 제1급 성적 학대죄 등을 저지 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범죄를 저지르도록 고용한 경우
- 범행이 조직범죄 또는 고도의 마약 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된 계획의 일 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잠재적 증인 기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기타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협하거나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경우(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 D.C. Code 제22편 제32장에 규정된 범죄로서 통상적으로 당해 범행과 수반되는 것보다 더 큰 금전적 손실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금전적 손실이 의도된 경우
- 피고인이 임명 또는 선고에 의하여 공직을 획득하려 하거나 재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공공의 신뢰에 반한 경우
- 양형기준상의 연속적/동시적 선고형 정책이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이 명백한 부정의를 초래하는 경우
- 위와 같은 10가지 가중 요소에 견줄 수 있는 다른 실질적이고 불가피한 근거를 양형 법관이 밝힌 경우

### (2) 감경 요소

- 피해자의 범죄 유발 정도가 강하여 당해 범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보다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
- 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수사개시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적·신체적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 죄책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강요, 회유, 위협으로 인하여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현저하게 경감시키는 경우
- 범행이 주로 다른 공범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피고인인 피해자의 안전 을 위하여 극도의 주의와 진지한 염려를 명백하게 한 경우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원래 범행을 저지를 명백한 경향이 없었던 경우
- 죄책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자신의 행동의 잘 못을 인식하거나 법의 요구를 준수할 능력이 현저하게 손상된 겨우
- 피고인이 다른 범죄인의 수사나 기소에 있어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고, 이러한 요소로 인한 감경이 범행의 중대성을 감소시키거나 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 양형기준상으로는 구금형이 요청되나 교정 당국과 협의 결과 피고인이 명백하고 실질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 내지 질환으로 인하여 가용한 수용시설에서 적절하게 보호되거나 치료되기 어려운 경우
- 양형기준상의 연속적/동시적 선고형 정책이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이 명백한 부정의를 초래하는 경우
- 위와 같은 9가지 감경 요소에 견줄 수 있는 다른 실질적이고 불가피한 근거를 양형 법관이 밝혔고, 그러한 근거가 죄책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현저하게 감경시킨 경우

## (3) 금지 요소

양형에 있어서 ① 인종, ② 성, ③ 결혼관계, ④ 민족적 기원, ⑤ 종 교적 소속, ⑥ 성적 취향은 고려되어서는 아니됨



## 5. 연속형과 동시형의 기준74)

워싱턴 D.C.의 경합범의 경우 범죄별로 선고형이 정하여지고 그 집행을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동시에 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관에게 재량권이 있으나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합범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에 있어서 연속형(consecutive sentence)으로 할 것인지, 동시형(concurrent sentence)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분	유형	기준
폭력범죄	피해자 1명, 복수의 범죄, 하나의 행위	판사의 재량
	피해자 1명, 복수의 행위	연속형
	피해자 복수, 하나의 행위	연속형
	피해자 복수, 복수의 행위	연속형
비폭력범죄	복수의 범죄, 하나의 행위	동시형
	복수의 범죄, 복수의 행위	판사의 재량
집행유예, 가석방, 보호관찰부 석방, 형집행 중 범죄		취소로 인하여 집행되거나 집행 중이던 형에 이어서 연속형
집행유예, 가석방, 보호관찰부 석방, 형집행 중은 아니지만 선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하여 복역하고 있는 경우		판사의 재량
법률이 연속형을 규정한 경우		연속형

<sup>74)</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53-54



### 6.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과 양형자문위원회의 반론

워싱턴 D.C.의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일부에서 비교적 형량의 폭이 넓으면서도 자발적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의미가 전혀 없고, 형종의 선택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을 줄이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양형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반론75)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양형기준이 기속적이 아닌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주(州)의 예에서도 자발적 양형기준은 높은 준수율을 나타냈고, 법관들이 워싱턴 D.C.의 양형기준이 제1심법원의 과거 양형실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였음을 인식하게 되면 전형적 사건에서의 양형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과거 형량과 하위 25% 해당하는 과거 형량을 배제하여 중간에 해당하는 50%의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양형편차는 감소하게 된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과거 양형실무에서 25% 이상 집행유예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과거의 사례를 무시하고 집행유예만이가능하거나 구금형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 또는 구금형을 선고하는 정도의 차이는 용인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부당한 양형편차를 감소시키는, 즉유사한 피고인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즉 공정성의 다른 측면은 합리적인 양형편차에 대하여는 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서로 다른 범행과 범죄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형량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하면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전력 이외의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sup>75)</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Annual Report, pp. 19–21



### 7. 양형기준의 시범실시

양형자문위원회는 실무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양형기준에 대한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최초에는 대법원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양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양형기준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적절한 입법조치와 함께 보다 영구적인 방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76) 워싱턴 D.C. 의회와 사법부는 이와 같은 양형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 6. 14.부터 양형기준에 대한 시범실시를 시작하였다.

## VIII. 양형기준 시범실시 후 형사사법의 변화

### 1. 관련 통계77)

### 가. 범죄증감

워싱턴 D.C.의 경우 매년 중최 사건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6년의 1,634건과 비교하여 2005년에는 2,553건으로 중죄사건이 56.2% 증가하였다. 다만 양형기준 도입 이후 중죄사건의 숫자가 2004년에는 2,674건이었다가 2005년에는 2,553건으로 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 빈도에 있 어서는 마약류범죄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다.

◈ 연도별·범죄유형별 구금형 비율

Year	Total Sentenced	Violent	Property	Drug	Weapon	Public Order	Other
1996	1634	447 (27.4%)	236 (14.4%)	489 (29.9%)	139 (8.5%)	277 (17%)	46 (2.8%)
1997	1777	472 (26.6%)	252 (14.2%)	511 (28.8%)	174 (9.8%)	332 (18.7%)	36 (2%)
1998	1972	519 (26.3%)	309 (15.7%)	515 (26.1%)	175 (8.9%)	404 (20.5%)	50 (2.5%)
1999	2129	485 (22.8%)	271 (12.7%)	603 (28.3%)	153 (7.2%)	560 (26.3%)	57 (2.7%)
2000	2274	418 (18.4%)	238 (10.5%)	871 (38.3%)	124 (5.5%)	558 (24.5%)	65 (2.9%)
2001	2424	443 (18.3%)	257 (10.6%)	970 (40%)	155 (6.4%)	525 (21.7%)	74 (3.1%)
2002	2226	400 (18%)	220 (9.9%)	938 (42.1%)	145 (6.5%)	523 (23.5%)	0
2003	2649	538 (20.3%)	313 (11.8%)	1145 (43.2%)	271 (10.2%)	300 (11.3%)	82 (3.1%)
2004	2674	552 (20.6%)	251 (9.4%)	1257 (47%)	172 (6.4%)	363 (13.6%)	79 (3%)
2005	2553	525 (20.5%)	263 (10.3%)	1176 (46.1%)	203 (8%)	330 (12.9%)	56 (2.2%)

<sup>76)</sup>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Report, pp. 13, 62

<sup>77)</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2006 Annual Report" (2006), p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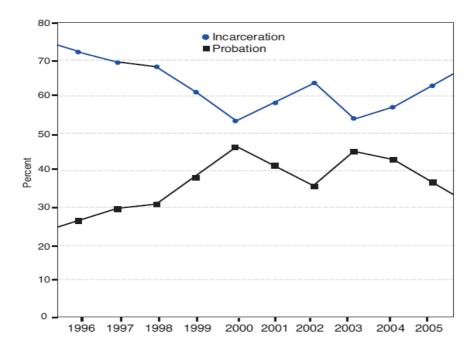
## 나. 구금형 비율

워싱턴 D.C.의 경우 정기형 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 구금형 비율이 증가하다가 2003년도에 감소하였으나 2004년 양형기준 실시 후 구금형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연도별 형종 분포 ◈

Year	Total sentenced	Incarceration	Probation	Othe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34 1777 1972 2129 2274 2424 2240 2649 2674 2553	1179 (72%) 1233 (70%) 1347 (68%) 1308 (61%) 1214 (53.5%) 1415 (58%) 1423 (64%) 1432 (54%) 1529 (57%) 1609 (63%)	426 (26%) 522 (29%) 603 (31%) 806 (38%) 1052 (46%) 1009 (42%) 804 (36%) 1199 (45%) 1145 (43%) 938 (37%)	22 (1%) 22 (1%) 15 (1%) 8 (.5%) 2 (.2%) 13 (.6%) 18 (1%) 0 (0%)

## ◈ 구금형과 집행유예의 연도별 추이 ◈





### 다. 구금형 형량

구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량을 12개월 미만,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 36개월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양형기준 도입 이후 형량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 연도별 형량 분포 ◈

Year	Total Sentenced	% under 12 Months	% 12 to 35 Months	% 36 or more months
1996	1057	254 (24%)	317 (30%)	486 (46%)
1997	1070	300 (28%)	342 (32%)	428 (40%)
1998	1178	401 (34%)	365 (31%)	412 (35%)
1999	1126	417 (37%)	360 (32%)	349 (31%)
2000	1011	425 (42%)	313 (31%)	273 (27%)
2001	1235	544 (44%)	395 (32%)	296 (24%)
2002	1365	423 (31%)	519 (38%)	423 (31%)
2003	1432	372 (26%)	616 (43%)	444 (31%)
2004	1529	382 (25%)	703 (46%)	444 (29%)
2005	1609	435 (27%)	772 (48%)	402 (25%)

#### 라. 양형기준의 준수정도

양형자문위원회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2년 동안 유죄판결이 선고된 5,454건에 대하여 CSOSA로부터 양형기준양식서(Sentencing Guideline Form)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양형정보를 축척하여 양형기준의 준수 정도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선고형의 87.9%가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칸에 속하였고, 이탈한 경우는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8) 그러나 양형기준의 해당 칸에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양형인자가 고려된 결과일 수도 있어 반드시 양형기준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준수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형종별로는 구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의해당 칸에 해당한 경우는 89.7%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선고형이 해당칸에서 제시한 하한 또는 상한에 집중되기 보다는79) 형량의 범위 내에서 고

<sup>78)</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2006 Report,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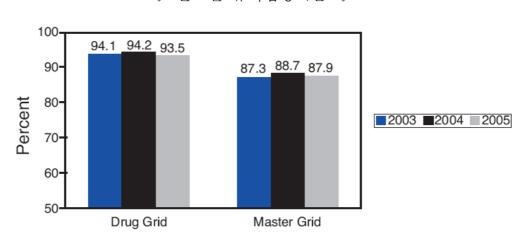


르게 형량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80)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의 해당 칸에 해당한 경우는 91%로 나타나 보다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제시된 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5%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마약류범죄나범죄의 중대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범죄에서 나타났다.81)

#### 2. 양형자문위원회의 자체 평가

워싱턴 D.C.의 양형기준은 시범실시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다양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제1항의 통계에 의하면 양형기준 실시 후 아직까지 형사사법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양형자문위원회의 자체 평가 내용82)을 소개한다.

먼저,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기준 도입 이후 유죄협상 비율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양형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인 2003년과 비교하여 2004년과 2005년의 유죄협상 비율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 연도별 유죄협상비율 ◈

<sup>79)</sup> 선고형이 양형기준의 하한과 동일한 경우는 12%, 상한과 동일한 경우는 7%로 나타났다.

<sup>80)</sup> 이러한 현상은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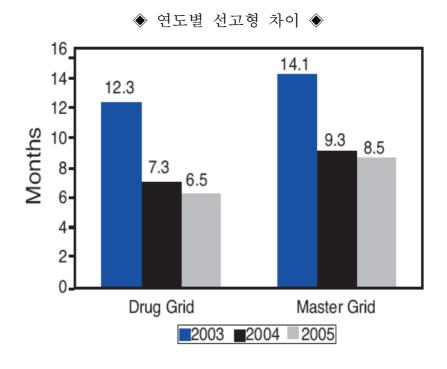
<sup>81)</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2006 report, pp. 15-24

<sup>82)</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2006 Report, pp. 30-36



양형자문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양형기준을 도입하면서 사건의 종국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둘째로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기준이 유사한 사건에서 설명되지 않는 양형의 편차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동종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선고된 형 중 중간에 해당하는 형과 가장 높은 선고형 또는 가장 낮은 선고형의 차이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양형의 편차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에서는 보는 것처럼 양형기준을 도입하기이전인 2003년과 비교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선고형의 편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양형자문위원회는 양형기준이 도입된 후 법관의 형종 선택에 있어서 구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비율 자체은 바꾸지 아니하면서도 양형자문위원회가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한 사건에서 주로 집행유예가 이루어진 결과 결국 형종의 선택을 양형자문위원회가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Ⅸ 양형기준 시범실시 후 양형위원회의 활동

### 1. 조직의 변경

위성턴 D.C. 의회는 2004년 6월경 「양형자문위원회 체계적 양형시스템 시범실시법(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Structured Sentencing System Pilot Program Amendment Act of 2004)」을 제정하여 양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양형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로 변경하였다. 그 후 위상턴 D.C. 의회는 2006년경 「양형자문위원회법에 대한 개정법(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Amendment Act of 2006)」을 다시 제정하여 양형위원회의 명칭을 '양형 및 형법 개정위원회(the DC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위원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15명의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인데, 의결권을 가진 15명의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공적 변호기관 대표 1명, CSOSA 대표 1명, 기타 5명이다.

#### 2.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워싱턴 D.C.의 권고적 양형기준 시행
- 양형기준의 적용 상황을 점검·지원
- 공정하고 일관된 양형정책을 촉진
- 양형정책과 실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 양형기준의 변경을 권고하기 위하여 실제 양형과 교정실무 및 그 분석 에 기초하여 양형기준제의 효율성을 평가
- 현행 형사법과 그 집행을 분석하고 워싱턴 D.C.의 통일되고 일관된 형 사법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개정 의견 제안



#### 3. 활동 내용

## 가. 교육83)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양형기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원, CSOSA, 변호사협회, 공적 변호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시범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법관, 변호사, 법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행 이후에도 새로 부임한 법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권고적 양형기준제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편집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는데, 2004년에 최초로 매뉴얼을 제작한 후 계속하여 수정하고 있다.84)

### 나. 양형기준 웹 개발

위원회는 수년간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양형리포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양형기준 웹((Sentencing Guideline Web, 다음부터 "SGW"라고 한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SGW는 양형기준 사용자들에게 각 사건에 적용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온라인상으로 양형기준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의 오류도 체크한다. SGW에 정보가 입력되면 양형위원회에 전산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게 되므로 양형을 분석하는데도 용이하다. 양형위원회의 200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SGW는 법원과 CSOSA의 협력 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예산은 전적으로 CSOSA가 부담하였다고 한다.85) 다만 아직까지 SGW가 활성화되지는 아니하였고, 위원회 직원들이 제한된 기반에서 SGW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다. 양형기준 시행 현황 분석

위원회는 CSOSA로부터 양형기준양식서를 수집하고, SGW에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면서 양형기준의 시행 현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2006년도에 이루

<sup>83)</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4 Annual Report" (2004), p. 2;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5 Annual Report" (2005), p. 10

<sup>84) 2006. 11. 1.</sup>에는 종전 매뉴얼을 수정하여 2006년판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sup>85)</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4 Report, pp. 4-6



어진 분석 결과는 위 Ⅷ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라. 추가 등급분류

위원회는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중죄가 추가되거나 법정형에 변동이생기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등급 분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007. 5. 18.에는 2006년 7월경 개정된 총체적 공공 안전법(Omnibus Public Safety Amendment Act of 2006)에 의하여 신설된 몇 가지 새로운 범죄와 법정형이 변경된 범죄에 대하여 주 격자 4급부터 9급까지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마. 위원회의 권고

위원회는 2006년 연간보고서를 통하여 비록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진 양형기준의 시범실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특히 양형기준과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2가지 판결, 즉 Blakely v. Washington, 542 U.S. 296(2004)과 United States v. Booker, 543 U.S. 220(2005)<sup>86)</sup>에 주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워싱턴 D.C.는 자발적 양형기준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87)</sup>

<sup>86)</sup>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Booker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ooker 판결의 쟁점은, ① 배심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았으나 판사가 양형과정에서 발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도록 강제한 연방양형기준이 수정헌법 제6조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② 연방양형기준이 헌법 위반이라면 어느 규정이 유효한지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는 판사가 배심원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sup>(</sup>beyond the reasonable doubt)에 이른 증거판단을 거치거나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만으로 사실인정을 하여 형을 가중한 것은 수정헌법 제6조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법 중 양형기준을 강제로 따르도록 한 조항{18 U.S.C. § 3553(b)(1), §3742(e)}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나머지 규정은 권고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결국 판사는 권고적인 연방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항소심은 그 양형의 합리성 (reasonableness)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sup>87)</sup>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2006 Report, pp.38-40



- 워싱턴 D.C.와 같은 자발적 양형기준, 즉 판사가 자유롭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정형 상한까지 적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에서는 연방 수정헌법 제6조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의회의 감독을 받는 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고 수정되는 양형기준은 자발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한 법정형 내에서 이루어진 양형에 대하여 심각한 헌법적 쟁점 또는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야기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헌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법자 원의 상당한 정도의 증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만약 의회가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를 그대로 입법화하여 판사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야기된다.

# X. 결론

지금까지 워싱턴 D.C.의 양형제도,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양형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워싱턴 D.C. 양형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목할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워싱턴 D.C.는 매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양형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양형개혁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양형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워싱턴 D.C. 의회는 양형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양형자문위원회가 양형개혁의 방향을 연구하면서 반드시고려하여야 할 양형개혁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양형자문위원회 역시 이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사명을 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이고 일관된 양형개혁을 위해서는 그 지향점을 사전에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워싱턴 D.C.는 양형개혁의 방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양형 개혁의 방법이 오로지 양형기준의 도입이라는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워싱턴 D.C. 양형자문위원회에서는 워싱턴 D.C.의 양형현황



을 살펴보고 미국 연방 및 각 주(州)에서 체계적 양형을 이루기 위하여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워싱턴 D.C.에 가장 적합한 양형개혁의 방법을 찾아나갔다. 특히 미국 연방 및 각 주(州)의 양형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워싱턴 D.C.가 추구하는 양형개혁의 목적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되는 9가지 항목을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론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우수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양형개혁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양형기준을 도입하기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양형 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각국의 다양한 양형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양형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가장 적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로 워싱턴 D.C.는 양형 편차의 해소가 모든 사건에서의 양형의 균등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양형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사건의 개별적 특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의 양형 재량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형기준의 효력을 권고적인 것으로 하였고,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형량의 범위도 비교적 넓게 하였다. 또한 개별적 양형인자를 수량화하지 아니하고 가중요소, 감경요소만을 예시하면서 법관이 양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형량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양형기준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워싱턴 D.C.에서 우려한 것처럼 형량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양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개별적 양형인자의 수량화논의에 있어서도 자칫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워싱턴 D.C.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단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하였는데, 이는 양형기준을 설정한 다른 주(州)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는 미국 연방과 마찬가지로 격자식 양형기준을 만들었지만범죄등급을 9개, 범죄전력을 5개로 구분하여 45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격자표를 만들었다. 미국 연방이 43개의 범죄등급과 6개의 범죄전력등급을 양축으로 하여 258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격자표를 만들었던 것과는 대조된다고 하겠다. 양형기준의 설정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실무가와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을 예측하려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편리하도록 단순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또는 경험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도 실제 양형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양형기준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면서 경험적 접근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양형실무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 울 뿐 아니라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양형기준을 신뢰하 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D.C.와 같이 경험적 접근방법만으로 양 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양형의 개선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 경험적 접근방법만을 사용한다면 결국 과거의 양형실무를 그대로 반영하 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거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형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범적 접근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접근방법과 경험적 접근방법 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를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이상원, "미국의 주 양형제도의 변천과 현황",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2003) 홍지영, "워싱턴 디씨 양형제도", 해외 양형제도 자료집, 사법정책실(2007)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Criminal Sentencing Practic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1993-1998" (September 30, 1999)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Repo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April 5, 2000)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2 Annual Report" (2002)

District of Columbia Advisory Commission on Sentencing, "2003 Annual Report" (2003)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4 Annual Report" (2004)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5 Annual Report" (2005)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2006 Annual Report" (2006)

District of Columbia Sentencing Commission, "2006 Practice Manual" (2006)